

23. 앤티가바부다(Antigua and Barbud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, 자영자	근로자, 자영자	-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공공 11% (4% / 7%) 민간 12% (5% / 7%)	공공 12% (4.5% / 7.5%) 민간 13% (5.5% / 7.5%)	보험료율 1% ↑
노령연금 지급요건	가입기간 550주, 61세	가입기간 600주, 62세	수급요건 ↑
노령연금 지급률(최대)	50%	50%	-
일시금	EC\$1,200 또는 총 납부액의 75% 선택	EC\$1,200 또는 총 납부액의 75% 선택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 및 현행법** : 1972년(사회보험), 1973년(노령), 1973년(유족), 1977년(장애), 1993년(사회부조), 2001년(자영자), 2013년(보험료 징수)

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사회부조**

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- **당연적용** : 근로자 및 자영자
 - **적용제외** : 배우자를 위해 근로하는 기혼여성, 가족 사업을 위해 근로하는 특정 가족 구성원, 특정 임시근로자, 외교관, 국제기구 근로자, 앤티가바부다에 거주하는 외국군인
- **사회부조** : 앤티가바부다에 거주하는 빈곤층

4 재원조달

- **가입자**
 - 사회보험
 - 보험료율

- 민간부문 : 월 가입소득의 5.5%, 연 0.25%씩 상향조정하여 2025년까지7% 도달 목표
- 공공부문 : 월 가입소득의 4.5%, 연 0.25%씩 상향조정하여 2025년까지6% 도달 목표
- 총수입은 기본소득, 초과근무수당, 휴가 및 휴일급여, 상여금, 수수료, 주거수당, 기타 인센티브를 포함함
- 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월 하한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 EC\$1,420
- 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월 상한소득 : 주 EC\$1,500; 2주 EC\$3,000; 월 EC\$6,500
- 가입자 보험료는 질병(사적부문만) 및 출산수당 재원으로 사용됨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
 - 월 가입소득의 10%
 - 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월 소득은 업종별로 상이하나 하한 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인 EC\$1,420 임
 - 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월 상한소득 : EC\$6,500
 - 자영자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수당 재원으로 사용됨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- 월 급여총액의 7.5%, 연 0.25%씩 상향조정하여 2025년까지 9% 도달 목표
 - 총수입은 기본소득, 초과근무수당, 휴가 및 휴일급여, 상여금, 수수료, 주거수당, 기타 인센티브를 포함함
 - 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월 하한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 EC\$1,420
 - 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월 상한소득 : 주 EC\$1,500; 2주 EC\$3,000; 월 EC\$6,500
 - 사용자 보험료는 질병(사적부문만) 및 출산수당 재원으로 사용됨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
- 사회부조 : 없음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600주 이상인(2년마다 50주씩 상향하여 2025년에 750주로 상향) 62세 도달자(2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2025년에 65세로 상향)
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60세 도달자
- 해외지급 가능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52주 이상 ~ 600주 미만인 62세 도달자
 - 해외지급 가능
- 노령사회부조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86세이고(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60세) 최소 15년 이상 거주해야 함(앤티가 바부다의 국민이 아닌 경우 20년 이상 거주)
 - 소득조사 : 연간 소득 총계 EC\$5,000미만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장애판정을 받은 60세 미만이고 장애 발생 직전 보험료 납부기간이 156주 이상인 자
 - 가입자의 의사가 장애정도를 판정함. 사회보장위원회의 의사가 2차 판정 실시하며 의견이 다를 경우 최고의료책임자가 결정
 - 해외지급 가능
- 장애일시금(사회보험)
 - 장애판정을 받은 60세 미만이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52주 이상 156주 미만인 자
 - 가입자의 의사가 장애정도를 판정함. 사회보장위원회의 의사가 2차 판정 실시하며 의견이 다를 경우 최고의료책임자가 결정
 - 장애일시금은 해외지급 가능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의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사망자와 3년 이상 혼인했거나 동거했었던 미망인, 사망자와 3년 이상 혼인했거나 동거했었으며 사망자에 의해 재정적으로 부양되었던 장애인 홀아비, 16세 (학생인 경우 18세, 장애자녀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 미혼자녀
 - 유족배우자가 재혼 시 연금 중지되며 유족연금은 해외지급 가능
-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의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일시금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사망자와 3년 이상 혼인했거나 동거했었던 미망인, 사망자와 3년 이상 혼인했거나 동거했었으며 사망자에 의해 재정적으로 부양되었던 장애인 홀아비, 16세 (학생인 경우 18세, 장애자녀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 미혼자녀
 - 유족일시금은 해외지급 가능
- 장제비 : 사망자가 최근 12개월 간 납부기간이 26주 이상이었거나, 현금질병급여·모성급여·노령·장애연금을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되며 해외지급 가능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 평균소득의 25%에 600주(점차 상향하여 2025년에 750주로 상향)를 초과하는 납부기간 매 50주마다 1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연평균소득은 최근 근로기간 10년 중 최대소득 기간 5년을 근거로 산정; 총 근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총 소득을 근거로 평균소득 산정함
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: EC\$6,500
 - 월 최저노령연금액 : EC\$350
 - 월 최대노령연금액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의 50% 임
 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보다 조기 청구 시 월 0.5%씩 감액됨
 - 보험계리 권고를 기준으로 조정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 : EC\$1,200 또는 사용자 및 근로자 총 납부액의 75% 중 큰 금액 지급
- 노령부조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월 EC\$225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 평균소득의 25%에 500주를 초과하는 납부기간 매 50주마다 1%씩 가산한 금액 지급(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의 50% 한도)
 - 연평균소득은 최근 근로기간 10년 중 최대소득 기간 5년을 근거로 산정; 총 근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총 소득을 근거로 평균소득 산정함
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: EC\$6,500
 - 월 최저노령연금액 : EC\$350
 - 월 최대노령연금액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의 50% 임
 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보다 조기 청구 시 월 0.5%씩 감액됨
 - 보험계리 권고를 기준으로 조정
- 장애일시금(사회보험) : EC\$1,200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총 납부액의 75% 중 큰 금액 지급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했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를 50세 이상인 미망인에게 평생 지급. 50세 미만의 미망인에게는 1년 간 지급. 장애가 있는 배우자의 경우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. 월 최저연금은 EC\$350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했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5%를 수급 가능한 고아에게 지급(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비례하여 감액),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의 경우 50% 지급. 월 최저연금은 EC\$87.50
 - 합산한 최대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

연금액의 100%임

- 보험계리 권고를 기준으로 조정
-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 : EC\$1,200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총 납부액의 75% 중 큰 금액 지급
- 장제비 : EC\$2,500의 일시금을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- **재무부(Ministry of Finance)** : 전반적 감독
- **앤티가바부다 사회보장위원회(Antigua and Barbuda Social Security Board)**
 - <http://www.socialsecurity.gov.ag>
 - 제도운영 및 사회보험제도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